

자체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12.



문화재청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4
2. 감사대상기관 .....	4
3. 감사중점 .....	4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	4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기관 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추진점검 미흡 등(기관주의) .....	6
2. 연구활동 지원 개선 필요(통보) .....	8
3. 교육훈련 여비 지급 부적정[시정(환수)] .....	11
4. 연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미흡 등(통보) .....	14
5. 예산 과목 적용 및 집행 부적정(기관주의·통보) .....	17
6. 소방계획서 작성 및 개선 필요(통보) .....	23

7. 공사 등 준공 시 보험료 정산 미실시[시정(환수)] .....	25
8. 계약 관련 업무 미흡[기관주의·통보·시정(환수)] .....	29
9. 근무지의 출장 위임·전결 규정 미준수(주의) .....	40
10. 국외 유적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통보) .....	44
11. 관사 운용 부적정(기관주의) .....	49
12. 문화재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통보) .....	51
13. 목조문화재 가해생물종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통보) .....	56
14. 고생물유체 연구정보시스템 운용 부적정(기관주의) .....	58
15. 이동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통보) .....	63
16. 자체 행정규칙 대국민 제공 미흡 및 규정 재검토 필요(개선) .....	66
17. 응급 상황에서 연수생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모범사례) .....	69

# 1.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목적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전통문화 유산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전 자체종합감사는 2017. 5. 15.부터 6. 2.까지 1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보존과학센터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중점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및 복지 현황,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물품 및 유물 관리 실태,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9. 10. 14.부터 11. 1.까지 15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9. 11. 1.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을 청취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별첨

---

# 문 화 재 청

## 기관주의

제 목 기관 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추진점검 미흡 등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소와 문화유산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국립문화재연구소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이하 ‘약정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2007.12.28.)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약정체결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현황('19.10월 현재)

구 분		목 표 (약정체결)	실 적 (약정체결)	예산액 (단위: 백만 원)	비고
2017	국내	10	8	242	성관관리지표에 MOU 체결 건수가 기관 목표치로 설정
	국외	12	7	182	
2018	국내	24	26	455	상 동
	국외	10	7	268	
2019	국내	12	12	112	성관관리지표 변경 ( MOU 체결 건수 ⇒ MOU 이행완료율)
	국외	2	2	27	
계	국내	46	46	809	
	국외	24	16	477	

[표 1] 교류·협력 약정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실적(33건)은 전년도(15건) 대비하여 높은 증가세(전년대비 220% 증)를 보였다. 2019년 실적(14건)은 다행히 성과관리지표가 MOU 체결건수에서 MOU 이행완료율로 변경되었기에 전전년도 실적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관 간 약정은 공동협의를 통한 원활한 업무진행 및 기관 홍보 등 순기능적

역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반면 기관 간 약정 체결은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며 업무협약의 범위를 정하여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표 1]을 보면 2017년~2018년간 약정 체결이 증가하면서 과제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액도 뚜렷한 증가세(전년대비 170% 증)를 보였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소가 기관 간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약정 지침 제4조(약정체결 절차)에 따르면 각 부서는 약정체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을 받은 때에는 연구기획과장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정체결의 사전 준비를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므로 연구기획과 차원에서 실제적인 사전검토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약정 지침 제7조(약정이행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실행약정을 체결한 부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에서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62건 중에서 4건(2017년 1건, 2018년 3건)은 실행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이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은 7월에 1회만 추진점검을 실시한 상태이다.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에서는 약정 지침 제4조(약정체결 절차)에 따라 연구소 연구과제와 약정체결 목적(필요성)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성(실행가능성),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약정체결 시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할 것이며, 약정 지침 제7조(약정이행 및 후속조치)에 따라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연 2회(반기별)로 추진사항 점검을 이행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 체결 지침」에 따라 사전검토 및 추진사항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연구활동 지원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소 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직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활동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2013.11.11.)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연구활동비(논문게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행사참가비 등)를 [표 2]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2] 연구활동비 지원 내역

연도	지원 건수	연구활동비(단위: 천 원)				학술대회 참가	
		소계	논문심사 (125건)	외국어 번역	학술대회 참가비 (84건)	출장비 (단위: 천 원)	건수 (82건)
2017	76	28,561	16,548	3,234	8,779	23,350	31
2018	82	27,880	15,828	2,220	9,781	30,136	30
2019. 10월까지	58	19,187	7,608	5,625	5,804	11,134	21
계	216건	75,628	39,984	11,079	24,364	64,620	-

한편 연구소와 유사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표 3]과 같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 발표 등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표 3]의 기관은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원 항목과 대상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표 3] 연구활동비 지원 관련 타 기관 사례

기관명	지원근거	지원항목	비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예규)제26조 및 자체연구과제 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	학회참가비 논문 게재, 교정 등	시험연구비 인정기준 마련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예규) 제63조	학술행사등록비 논문 게재료 영문 교정비 등	논문의 주저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불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예규) 제22조	논문 게재 및 발표 등 소요경비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훈령) 제22조	논문 게재 및 발표 등 소요경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훈령) 제49조의 5	논문게재료	
국립원예과학특작원 및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대외발표 규정 (훈령) 제8조	논문게재 제반비용 학회등록비 등	논문의 주저자가 아닌 경우 또는 학술발표의 주발표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불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훈령) 제14조	논문 게재 및 발표 등 소요경비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 규정(규칙) 제31조	논문 게재 및 발표 등 소요경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업 관리규정(훈령) 제14조	논문게재 심사료 등 학회등록비	

[표 2]를 보면 연구소는 최근 3년간 총 216건 75,628천원 규모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학술대회 참가(84건 / 24,364천 원)와 관련한 82건에 대해서는 공무출장으로 출장비 64,620천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연 평균 약 49,500천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활동 지원에 대하여 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반해 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 과정(학회 참가)에서는 연구소의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학회 참가(3건), 발표자 외 2명 이상 참가(12건)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과제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 유무 등 공무(公務)에 의한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연구활동 규정」 폐지 및 ‘연구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훈령 제88호)」 개정을 추진하여 연구활동 지원을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성과에 대한 대외발표로 제한하고 부서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시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연구과제 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연구활동에 연구활동비가 지원 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문 화 재 청

## 시 정(환수)

제 목 교육훈련 여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비 및 식비의 세부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일 비	식 비
교육훈련기관구분			
근무지내 소재 교육훈련기관	합숙의 경우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않음	-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일비의 5할	-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 소재 교육훈련기관	합숙의 경우 (또는 기숙사 이용)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않음	-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일비의 5할	-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 교통비 및 숙박비는 상한액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함

그런데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6월)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교육훈련 여비 정산(127건)을 재검토한 결과

[표 5]와 같이 교육훈련 여비의 과 지급한 내용(18건 / 502천 원)이 확인되었다.

[ 교육훈련 여비 과지급 사례 ]

- 일비 계산이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일비의 5할'이 적용 안 된 경우  
 ⇒ e-사람 [복무-교육훈련]에서 근무지외 교육파견 결재 상신 필요
- 교육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는 일자에 일비가 지급된 경우
- 교육기관 교육비에 중식비를 포함하여 교육비를 납부하고 여비 정산시에 중식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 등

[표 5] 교육훈련 여비 지급 현황(2017년~2019년 6월)

(단위: 원)

건수	교육훈련 여비(최초 정산)			과 지급액(감사 결과)		
	일비	식비	계	일비	식비	계
127건	8,535,000	8,591,670	17,126,670	170,000	332,380	502,380

\* 실비 성격의 교통비 및 숙박비는 제외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에서는 향후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하고 과지급된 금액은 환수조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과지급된 교육훈련 여비 502,380원을 환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환수)]

[붙임 1] 교육훈련 여비 과지급 내역

(단위: 원)

부서	성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과 지급액(감사 결과)		
				일비	식비	계
행정운영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9.04.11 ~ 19.04.12.(2일)		13,340	13,340
연구기획과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8.02.26 ~ 18.04.06.(40일)	100,000	153,340	253,340
고고연구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18.05.30 ~ 18.06.01.(3일)		19,980	19,980
고고연구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18.05.30 ~ 18.06.01.(3일)		19,980	19,980
고고연구실	▮▮▮▮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	18.05.30 ~ 18.06.01.(3일)		19,980	19,980
고고연구실	▮▮▮▮	통계교육원	19.03.18 ~ 19.03.20.(3일)		19,980	19,980
미술문화재 연구실	▮▮▮	통계교육원	17.05.29 ~ 17.05.31.(3일)	10,000		10,000
미술문화재 연구실	▮▮▮	통계교육원	18.07.04 ~ 18.07.06.(3일)		19,980	19,980
미술문화재 연구실	▮▮▮	공무원연금공단	18.10.30 ~ 18.11.02.(3일)	10,000		10,000
보존과학 연구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7.10.16 ~ 17.11.03.(19일)		32,500	32,500
자연문화재 연구실	△△△	조달교육원	18.05.09 ~ 18.05.11.(3일)	10,000		10,000
자연문화재 연구실	▶▶▶	(사)수목관리연구소	19.03.11 ~ 19.03.14.(4일)	20,000		20,000
안전방재 연구실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18.07.08 ~ 18.07.20.(13일)	20,000		20,000
안전방재 연구실	▼▼▼	대한건축학회	19.01.30 ~ 19.01.31.(2일)		6,660	6,660
안전방재 연구실	▽▽▽	대한건축학회	19.01.30 ~ 19.01.31.(2일)		6,660	6,660
안전방재 연구실	◀◀◀	대한건축학회	19.01.30 ~ 19.01.31.(2일)		6,660	6,660
안전방재 연구실	◁◁◁	대한건축학회	19.01.30 ~ 19.01.31.(2일)		6,660	6,660
안전방재 연구실	◆◆◆	대한건축학회	19.01.30 ~ 19.01.31.(2일)		6,660	6,660
계				170,000	332,380	502,380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연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미흡 등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81.12.31)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직원들의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와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2013.11.12.)하였다.

또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7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제17조 연간 교육계획 수립, 제19조 및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가. 안전관계자 등 선임 및 변경시 보고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연구소의 안전관계자 등은 [표 6]과 같으며 안전관계자 등의 선임 및 변경 시에는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선임 및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개정(2014.03.12.)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연구소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표 6] 안전관계자 등 현황

구 분	성명 (기관명)	자격	선임 등 년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임 구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최종덕	기관장	2018.01.26.	소장	겸임
관리감독자	김정남	부서장	2018.10.01.	과장	겸임
	김삼기	부서장	2019.02.07.	과장	겸임

구 분	성명 (기관명)	자격	선임 등 년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임 구분
관리감독자	이주현	부서장	2018.03.30.	과장	겸임
	노명구	부서장	2019.07.01.	과장	겸임
	이규훈	부서장	2019.02.07.	과장	겸임
	김성도	부서장	2019.07.01.	과장	겸임
	유재은	부서장	2014.07.01.	과장	겸임
	임종덕	부서장	2019.02.07.	과장	겸임
	정종근	부서장	2019.07.01.	과장	겸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 (●●●●●●●●●●본부)	안전관리자	2014.01.01.	차장	겸임
	◆◆◆ (●●●●●●●●●●본부)	안전관리자(부)		과장	겸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	보건관리자	2014.01.01.	의사	겸임
	ⓂⓂⓂ	보건관리자		간호사	겸임
	○○○	보건관리자		산업위생사	겸임

### 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연구소는 법 제31조 및 규정 제19조(신규채용자 교육), 제22조(정기 교육), 제23조(관리감독자 교육)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안전·보건 교육 추진실적[표 7]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안전·보건 교육 추진실적

구 분	의무교육시간	연도	대상인원 (시간)	교육실적	참여율 (%)	비고
정기 교육	관리 감독자 연간16시간 (감면 8시간)	2017	9명(128시간)	-	0%	사무관급 이상 4명(64시간)
		2018	9명(128시간)	1명(16시간)	11%	사무관급 이상 1명(16시간)
		2019	9명(128시간)	4명(64시간)	44%	
	근로자 분기별 3시간 (감면 1.5시간)	2017	150명	112명	75%	
		2018	200명	178명	89%	
		2019	250명	224명	90%	
채용시 교육	신규 채용 채용 시 8시간 (감면 불가)	2017	36명	-	0%	
		2018	88명	-	0%	
		2019	29명	7명	24%	10월 현재

## 다. 규정의 현행화 필요

법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 일부개정 되었지만 연구소는 규정 제정 (2013.11.12.)이후에 한 차례도 규정 개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소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무범위 변경,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소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법의 개정에 맞춰 연구소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연구소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 참석률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교육의 시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도록 「국립 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문 화 재 청

## 기관주의·통보

제 목 예산 과목 적용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 가. 용역계약 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수용비(210-01) 집행지침은 2017년부터 [표 8]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다.

[표 8]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기 존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nput type="checkbox"/>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예산 세목	내용	예산 세목	내용
일반수용비 (210-0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일반수용비 (210-0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2017년 이전에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던 ‘소규모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2017년부터는 일반용역비<sup>1)</sup>(210-14)를 신설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용역을 추진할 경우 지침에 따라 일반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24건 596,564천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나. 상품권 구입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등의 구매·사용·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13.10월)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상품권 등 구매 및 관리 투명성 제고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14.3월)·시행하였고 이후에 지침을 [표 9]와 같이 개정('18.7월)하였다.

[표 9] 「문화재청 상품권 등 구매 및 관리 투명성 제고 지침」

현행	개정('18.7.6.)								
<input type="checkbox"/> (공통사항) 상품권 등의 지급 및 지급 제한 <input type="checkbox"/> (구매 예산 과목) 상품권 등은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구매할 수 있으며, 포상금 및 사례금 등 예산 집행을 상품권으로 할 경우에도 예산 과목 및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공통사항) 상품권 등의 지급 및 지급 제한 <input type="checkbox"/> (구매 예산 과목) 상품권 등은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구매할 수 있으며, 포상금 및 사례금 등 예산 집행을 상품권으로 할 경우에도 예산 과목 및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산 과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수용비 (210-01)</td> <td>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td> </tr> </tbody> </table>	예산 과목	내용	일반수용비 (210-01)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산 과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포상금 (310-03)</td> <td>- 현상모집의 상금 -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에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td> </tr> </tbody> </table>	예산 과목	내용	포상금 (310-03)	- 현상모집의 상금 -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에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예산 과목	내용								
일반수용비 (210-01)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예산 과목	내용								
포상금 (310-03)	- 현상모집의 상금 -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에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하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지침 개정·시행 후에도 [표 10]과 같이 지침에 맞지 않음에도 일반수용비로 상품권을 구매(8회, 5,038천 원)하였다.

[표 10] 일반수용비로 상품권 구입 현황

일자	건명	집행액(원)
2018-07-12	2018년 3분기 변화관리 추진 문화상품권 구입	450,000
2018-08-17	소식지 「문화재 창」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당첨자 상품권 구입	150,000
2018-09-20	2018년 3분기 변화관리(춘하추동인) 추진 문화상품권 구입	400,000
2018-10-18	2018년 4분기 변화관리 추진 문화상품권 구입	665,000
2018-11-12	2018년 변화관리(가족에게 보내는 응원메세지_임산부) 추진 문화상품권 구입	95,000
2018-12-17	50주년 기념 포어 공모 당선자 시상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대금	1,000,000
2018-12-17	주요행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우수담당자 포상용 온누리상품권 구입대금	600,000
2019-03-14	2019년 변화관리(가족에게 보내는 응원 메세지(입학생, 임산부)) 추진 상품권 구입	1,947,500
합계		5,307,500

## 다. 유류비 예산 집행 부적정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류비(210-08)는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시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유류비(210-08)를 [표 11]과 같이 지침에 맞지 않는 음료 및 다과 구입, 차량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등에 집행(17회, 5,169천 원)하였다.

[표 11] 유류비 집행 현황(세부사업명: 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일자	건명	집행액(원)
2017-09-14	201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계약실무 교육 음료 및 다과비	81,120
2017-09-14	201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계약실무 교육 음료 및 다과비	227,640
2017-11-06	공용차량 엔진오일 교체 외9건	979,000
2017-12-26	공용차량 소모품 교체(버스)	352,000
2018-02-19	공용차량 소모품 교체(스타렉스)	93,500
2018-03-06	공용차량 소모성물품 교체(버스)	682,000
2018-03-09	공용차량 세차(카니발)	28,000
2018-03-16	공용차량 세차(카니발)	50,000
2018-04-02	공용차량 수리(버스)	358,391
2018-06-29	공용차량 수리(버스)	301,796
2018-06-29	공용차량 세차(카니발)	40,000
2018-07-19	공용차량 정기검사(버스)	78,000
2018-07-23	공용차량 엔진오일 교체(버스)	330,000
2018-09-11	공용차량 세차(카니발)	28,000
2018-09-20	공용차량 수리(스타렉스)	1,276,000
2018-11-12	공용차량 수리(버스)	236,500
2019-05-29	청사 조경관리용 기계경비	26,703
합 계		5,168,650

## 라. 피복비 집행 부적정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문화재보호기금 시험연구비(210-13목)에서 [표 12]와 같이 매년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시험연구비(210-13) 내 피복비 예산 현황

기관(부서)명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고고연구실	10,500,000	10,500,000	9,000,000	
미술문화재연구실	-	-	3,000,000	
건축문화재연구실	4,000,000	4,000,000	4,000,000	
보존과학연구실	9,000,000	9,000,000	9,000,000	
복원기술연구실	12,000,000	12,000,000	12,000,000	
자연문화재연구실	5,000,000	5,000,000	5,000,000	
안전방재연구실	5,900,000	9,000,000	9,000,000	
문화재보존과학센터	9,600,000	6,900,000	7,200,000	
계	56,000,000	56,400,000	58,200,000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피복비(210-03목)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상기 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의 성격에 맞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업무성격상 적합한 작업복을 구입·지급하여야 하고, 개인 목적의 용도로 구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피복비 집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 이외에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는 확대 지급할 수 없음에도 총 66건 중 38건이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피복비를 구입·지급하였다.

또한 외부 현장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피복(작업복)에는 기관의 대외 홍보 및 품위 유지를 고려하여, 외부인이 쉽게 기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작업복에 기관 마크를 부착하고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며, 구입한 피복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현장 작업용으로 구입한 재킷 등의 피복은 기관마크 등의 표식이 가능함에도 총 17건이 기관마크가 없고, 8건은 탈부착이 가능한 자석으로 기관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며, 2~5가지 색상으로 통일성 없이 구입·사용하고 있기에 기관의 대외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용도 등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복원기술연구실의 경우 실험복의 구입은 「시험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의 피복비에 구입하여야 하나, 2017.1~2019.9월까지 총 5건이 피복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구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① 향후 용역 추진 시 일반용역비(210-14)로 예산을 편성·확보하여 집행지침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② 예산 부족으로 210-01(일반수용비)에서 지침에 맞지 않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나, 향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③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210-08(유류비) 예산을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④ 향후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피복을 지급하고 기관 표식 철저 및 통일성을 기하며, 「시험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시험연구비의 피복비 예산에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① 일상적인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하여 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상품권 구입 및 유류비 지출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② 피복비 구입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관의 대외 홍보가 가능하도록 기관 표식 및 통일성을 기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붙임 2] 일반수용비로 추진한 용역 현황(세부사업명: 문화재연구소운영지원(R&D))

연도	건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 원)
2017	201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건관리 업무대행 용역	●●●●●● ●●병원	2016.12.14.~ 2017.12.31.	9,000
	201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산업안전 업무대행 용역	◎◎◎◎◎◎◎◎본부 대전지점	2016.12.07.~ 2017.12.31.	6,400
	2017년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활용 물품 관리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	2016.12.30.~ 2017.12.31.	8,400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식지 '문화재 창' 제작 배포	(주)○○○○○○○○미디어	2017.01.26.~ 2017.12.22.	65,010
	2017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요행사 모니터링 용역	○○○○○○○○(주)	2017.05.10.~ 2017.12.22.	20,900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동 전시표본 제작	●●●●●●	2017.06.20.~ 2017.11.10.	15,500
	천연기념물센터 전시용 매머드 골격표본 설치	○○○○	2017.08.30.~ 2017.12.22.	70,000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건관리 업무대행 용역	●●●●●● ●●병원	2018.01.09.~ 2018.12.31.	9,000
	2018년 RFID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	2018.01.11.~ 2018.12.31.	8,400
	20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산업안전 업무대행 용역	◎◎◎◎◎◎◎◎본부 대전지점	2018.01.11.~ 2018.12.31.	7,200
	천연기념물센터 전시용 매머드 골격표본 설치(2차)	○○○○	2018.01.26.~ 2018.03.27.	17,900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식지 '문화재 창' 제작 배포	(주)○○○○○○○○미디어	2018.01.31.~ 2018.12.21.	69,000
	20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요행사 모니터링	○○○○○○○○(주)	2018.05.10.~ 2018.12.06.	20,000
	국립문화재연구소 지역문화 유산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용역	●●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06.19.~ 2018.08.17.	20,000
	201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및 지원 관련 만족도 조사	(주)○○○○	2018.07.30.~ 2018.12.26.	31,500
	천연기념물센터 매머드 전시 콘텐츠의 홍보교육용 메이킹필름 제작	주식회사 ○○○○○○○○연구소	2018.08.09.~ 2018.11.06.	14,000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재개관 행사 용역	(주)□□□□□□□□	2018.09.05.~ 2018.09.17.	20,600
2019	2019년 RFID 기반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주식회사 ○○	2019.01.04.~ 2019.12.31.	8,400
	2019년 산업안전관리업무 대행 용역	◎◎◎◎◎◎◎◎본부 대전지점	2019.01.07.~ 2019.12.31.	9,100
	2019년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	●●●●●● ●●병원	2019.01.07.~ 2019.12.31.	10,854
	2019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식지 '문화재 창' 제작 및 배포	□□디자인	2019.01.31.~ 2019.12.20.	68,600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문화 재연구소 성과지표 고도화	□□□□□□□□ 주식회사	2019.03.18.~ 2019.05.16.	20,800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 50돌 홍보영상 제작	(주)□□□□□□□□□□	2019.09.06.~ 2019.10.31.	33,000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 50돌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행사 용역	(주)□□□□□□□□	2019.10.28.~ 2019.11.15.	33,000
계			596,564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소방계획서 작성 및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6항제1호의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제1항제8호의 기준에 따르면 소방계획서에는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소방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에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이하 ‘중원연구소’라 한다) 부지에 건축문화재 안정성평가 시험연구동을 건립(이하 ‘충주 시험연구동’이라 한다 / 2017년 11월 준공) 한 후 현재까지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원연구소 소방계획서에도 충주 시험연구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연구소 소방계획서는 2019년 10월 현재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 등으로 전보된 직원들이 자위소방대에 편성<sup>2)</sup>되어 있는 등 인원에 대한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에는 직원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직원이 자위소방대에 편성되었는지 또는

2) 2019년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직원들이 진압반, 구급구조반, 대피유도반에 편성되어 있음

개별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 13] 연구소 소관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구분	건물명	위치	층수 (지하/지상)	연면적(㎡)	지적사항	비고
국립 문화재연구소	본관동	대전 유성구 문지동 472	지하1/지상4	6,745	인원 현행화 필요	
	중앙매장동		지하1/지상3	3,577		
	연구동		지하1/지상3	984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지하1/지상4	7,808		
	충주 시험연구동	충북 충주시 금릉동 572-1	지상2	625	소방계획서 미작성	'17. 11월 준공
천연 기념물센터	연구 및 표본관리동	대전 서구 만년동 396-1	지하1/지상3	2,940	자위소방대원 성명 표기 필요	
	전시관동		지상2	3,902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소방계획서에 대하여 인사이동 현황에 따라 즉시 현행화 하고 천연기념물센터의 소방계획서에 자위소방대원 성명을 명시하여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겠으며, 충주 시험연구동을 중원연구소 소방계획서에 포함시켜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충주 시험연구동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소방계획서에 포함시키고, 연구소 소방계획서는 자위소방대 편성 인원 등 인원 현행화를 하고, 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소방계획서는 자위소방대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에 직원 성명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문 화 재 청

## 시 정(환수)

제 목 공사 등 준공 시 보험료 정산 미 실시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 가. 공사 준공 시 보험료 정산 미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18년 11월 계약 체결한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데크 교체 및 보수공사’ 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여부 및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환경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준공처리 하였다.

[표 14] 보험료 등 미정산 공사

(단위: 원)

계약 일자	건명	준공 일자	준공금액	보험료 미정산 금액	환경관리비 미정산 금액	환수금액
2018. 11.30.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데크 교체 및 보수공사	2018. 12.10.	15,170,000	244,068	56,034	400,000

따라서 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정산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환경관리비 400,000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완료 시 보험료 정산 미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2017년 9월 (주)○○○○○○○○○○○○○○○○와 계약 체결한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건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자의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사업장으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와,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에 대한 현장명부 등 감독공무원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가 없음에도 모두 인정하여 정산 없이 준공처리 하였다.

**[표 15]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관련 미정산 보험료**

(단위: 원)

계약 일자	건명	준공 일자	지급금액	보험료 미정산 금액	환수금액	비고
2017. 09.27.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1차)	2018. 03.01.	99,129,800	896,289	1,137,130	
2018. 04.01.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2차)	2018. 08.23.	1,239,003,700	14,608,353	18,735,320	
소 계			1,338,133,500	15,504,642	19,872,450	

따라서 연구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정산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872,450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환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의견**      ① 센터에서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정산 미실시 금액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2제2항 및 제3항, 집행기준 제94조3항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해당 사업장단위 납입확인서 또는 현장인 명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일반 납입확인서의 납부자 명단에 대해 착수계의 투입인력 여부만 확인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사업부서 및 감리자가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일자에 대해 해당 작업자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 ①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층 데크 교체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미정산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환경관리비 400,000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환수하고,
- ②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미정산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872,450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환수)]

# 문 화 재 청

## 기관주의·통보·시정(환수)

제 목 계약 관련 업무 미흡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 가. 계약 전 과업 수행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사업을 수행할 때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하게 함이 타당하다.

미술문화재연구실은 ‘조선시대 개인일기 해제 및 국역 대상 사진 촬영’ 건에 대하여 행정운영과에 계약을 요청(2018.4.10.)하였고, 계약담당자는 ▲▲▲▲▲(대표 ▲▲▲)와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sup>3)</sup>을 체결(2018.4.20.)하였다.

미술문화재연구실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번 감사 기간 중 해당 용역의 결과물(사진이미지)을 확인한 결과 계약 체결 이전인 2018.4.11.(충남대학교), 2018.4.12.~4.13.(대전시립박물관), 2018.4.18.(충주박물관) 사진촬영이 이루어져 계약 체결 전 실제 과업의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진 촬영이 최종 2018.7.10.까지 이루어졌음에도 계약의 변경 없이 2018.6.27.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확인(검사)하였고, 2018.7.9.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다.

3) 계약금액: 21,500,000원 / 계약기간: 2018.4.20. ~ 6.22.

## 나. 제안서 평가 부적정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202호, 이하 ‘업무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7조(평가의 실시)제7항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평가 장소에서 평가표에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제안서 평가 위원 수 부적정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제2항에 따라 사업예산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평가위원을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안전방재연구실은 ‘석조문화재 지진거동 특성 및 보강방안 연구’ 건의 제안서 평가(2017.9.25.)를 실시하며, 사업예산이 110,000,000원이므로 평가위원을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5명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 2)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업무처리 규정 제9조(평가의 실시)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처리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지합측정기 구매’ 건의 제안서 평가(2018.5.1.) 시 기술부분 규격사양충족도 항목의 배점한도를 60점으로 하였고, 미술문화재연구실 또한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기록 방안 연구’ 건의 제안서 평가(2018.4.16.) 시 용역계획의 적정성,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등 2개 항목의 배점한도를 각각 35점으로 하는 등 평가항목 배점한도가 30점을 초과하였다.

또한 보존과학연구실 ‘출토 유물 분석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연구’ 건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제안요청서를 변경하여 입찰 공고한 후 단독응찰자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2018.5.3.)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제안서 평가표의 경우 용역계획의 적정성,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2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35점으로 하였고 ▲등급별 환산율을 100%, 90%, 80%, 70%, 60%로 정하였으면 35점의 경우 등급별 배점기준을 35, 31.5, 28, 24.5, 21의 순서로 정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환산율과 다르게 배점기준을 35, 33.5, 32, 30.5, 29로 정하여 평가하였다.

3)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차이 과다

업무처리 규정 <별표 4-2>에 [표 16]과 같이 각 평가 등급별 환산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 16]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별표 4-2> 등급별 환산율

등 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그러나 미술문화재연구실 등은 제안서 평가 시 [표 17]과 같이 각 평가 등급별 환산율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런 경우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과도하여 특정인의 평가점수가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 17]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안서평가 시 평가 등급별 환산율

배점한도	구 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30	30~25	24~20	19~15	30~10	9~1
20	20~18	17~15	14~12	11~9	8~1
15	15~13	12~9	8~6	5~3	2~1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과도한 계약 사례는 [표 18]과 같다.

[표 18]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과도한 계약

부서	계약명	평가일자	단일 항목 평가자별 최대 평가점수차이	업체수
안전방재연구실	건축문화재 지진 대응 기획 연구	'17.10.11	40%	1

부서	계약명	평가일자	단일 항목 평가자별 최대 평가점수차이	업체수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류 국역	'17.07.04	60%	3
미술문화재연구실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조사보고서 발간	'17.07.11	66.7%	11
미술문화재연구실	고대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발간	'17.09.18	50%	4
자연문화재연구실	기증 매머드 화석표본 도록 발간	'17.10.24	40%	4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보고서	'18.02.08	66.7%	3
미술문화재연구실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문화 발간	'18.04.03	60%	9
안전방재연구실	재료시험기 구매	'18.05.15	60%	5
미술문화재연구실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 발간	'18.06.26	75%	8
미술문화재연구실	고려도경, 숨은 그림 찾기	'19.06.12	50%	4
미술문화재연구실	실크로드 연구 사전 동부 편(중국신장)	'19.06.17	50%	7
복원기술연구실	전통 단청안료의 과학적조사분석보고서 발간	'19.06.19	50%	4

안전방재연구실 2017년 ‘건축문화재 지진 대응 기획 연구’ 건의 제안서 평가에서는 배점한도가 10점인 경우 등급별 배점기준을 10, 8, 6, 4, 2의 순서로 정하여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배점기준 80%를 초과하였다.

미술문화재연구실 2017년 ‘조선시대 개인 일기류 국역’ 건의 제안서 평가에서는 사업수행계획 등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한도만을 정하였을 뿐 평가 등급별 환산율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평가하도록 하여 배점한도가 25점인 사업수행계획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 1인이 평가 대상별로 각각 25, 23, 10점을 부여하는 등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배점기준 60%에 달하였다.

#### 4) 평가등급별 점수 외 별도의 점수 부여

연구소는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표 19] 평가등급별 점수 외 별도의 점수 부여 사례

부서	계약명	평가일자	평가등급 외 점수 내역	업체수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 일기류 국역총서 발간	'19.05.20	1인(3개 항목)	3

부 서	계 약 명	평가일자	평가등급 외 점수 내역	업체수
복원기술연구실	중요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18.05.16	4인(5개 항목) *최저배점 이하 점수 부여	9
안전방재연구실	건축문화재 지진 대응 기획연구	'17.10.17	1인(4개 항목)	단독응찰
건축문화재연구실	몽골의 고건축4-초이진 라마 사원 보고서 발간	'19.08.02	1인(5개 항목)	4
복원기술연구실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통계 모델 수립	'19.07.12	2인(2개 항목)	단독응찰

연구소는 [표 19]와 같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였다.

미술문화재연구실은 ‘조선시대 개인일기 국역총서 발간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를 실시(2019.5.20.)하며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와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가 적힌 평가표에 각각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평가위원 5명 중 1인의 평가위원이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가 아닌 별도의 점수를 [표 20]과 같이 부여하였다.

[표 20] 평가등급별 점수 외 별도의 점수 부여 사례

배점한도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평가등급별 점수 외 부여점수
30	30	27	24	21	18	29, 28, 26, 25
20	20	18	16	14	12	19,17
15	15	13.5	12	10.5	9	14,13

복원기술연구실은 ‘중요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건의 제안서 제출업체(9개)에 대하여 4인의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실시(2018.5.16.)하며 만점을 부여한 1건을 제외한 35건의 평가표에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가 아닌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히 2건의 경우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인 18점(배점한도 30점), 15점(배점한도 25점)보다 낮은 점수인 13점, 15점(배점한도 30점), 13점(배점한도 25점)을 부여하였다.

##### 5) 정량평가 평가 미흡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4항과 제8항에 따르면 경영상태, 수행실적 등 정량적 평가항목의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고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제안서 평가 중 실적 등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이며, 실적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면 평가 기준에 따라 동일 업체에 대하여는 각각의 평가위원들이 동일 점수를 부여함이 타당하나 [표 21]과 같이 정량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표 21] 제안서 평가 중 정량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미흡

부 서	계 약 명	평가일자	평가오류항목
복원기술연구실	전통 한지 관련 고문헌 조사 및 연구자료 집성	'17.5.8.	참여연구원전문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축문화재연구실	증강현실(AR) 기반 황룡사 중문 실감형 콘텐츠 제작(대행사업)	'18.2.20	신용평가등급, 참여인력 전문성

복원기술연구실은 ‘전통 한지 관련 고문헌 조사 및 연구자료 집성’ 건에 대해 단독입찰자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를 실시(2017.6.12.)하였다.

그러나 ▲정량평가 2개 항목(참여연구원전문성 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5점)의 배점합계가 35점(80% 환산 시 28점)으로 배점한도인 20점을 초과하였고 ▲정량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최고 점수(20점)와 최저 점수(12점)의 차이가 배점한도(20점)의 40%로 30%를 초과하였으며 ▲2개 항목에 대한 평가위원별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에도 5명 평가위원이 각각 참여연구원전문성에 대하여는 18(우수)~12(매우미흡),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하여는 13.5(우수)~12(미흡)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각각의 평가위원 별로 다르게 평가하였다.

#### 다. 원가계산 등 미흡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천연기념물 센터 소장 매머드 화석표본 3D스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견적서 등을 받아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소요예산

21,862,500원)’를 작성한 후 계약부서에 (재)▲▲▲▲▲▲▲▲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계약부서는 시담 후 21,000,000원에 계약(2017.6.30.)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초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에는 보고서인쇄 비용(2,000,000원 / 100,000부 ×20부)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보고서 인쇄 내용 및 비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같이 외장하드만 납품하여 원가계산 등이 미흡하여 예정가격에 불필요한 보고서 비용이 포함되었고 해당 금액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연문화재연구소는 ‘한반도 백악기 척추동물발자국 세계자연유산 등재 로드맵 기초연구’ 용역의 소요예산(22,000,000원)에 보고서인쇄비 1,950,000원(65,000원 ×30부)을 포함시킨 후 수의 시담을 통해 (사)□□□□□□협회와 계약을 체결(2017.4.4.)하였다.

그러나 용역 후 해당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는 84Page 단색 보고서(추정가 300,000원 / 10,000원×30부)로 보고서인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볼 수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라. 선금 지급 시 보증서 미청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제35조(채권확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천연기념물센터 전시용 매머드 골격표본 설치’ 용역을 ●●●●와 계약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인 ●●●●가 선금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총 48,930,000원(총 계약금액의 70%)의 선금을 지급하며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지급각서만을 제출받은 후 선금을 지급하였다.

**마. 검사 기간 미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표 22] 검사 기간 미준수**

부 서	계 약 명	검사요청일	검사(검수) 완료일	지연일수
안전방재연구실	재료실험실 항온항습기 구매	'18.09.20.	'18.10.15.	11일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서울1 수록일기 자료 사진촬영	'17.08.04.	'17.09.04.	17일

안전방재연구실 ‘재료실험실 항온항습기 구매’ 건의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가 검사 요청(2018.9.20.)을 하였으면 2018.10.4.까지 검사를 완료함이 타당하나 검사공무원이 2018.10.5. 검사를 완료하였고, 물품담당공무원이 2018.10.15. 검수를 완료하여 검사요청 후 완료까지 25일이 소요되었다.

미술문화재연구실 ‘조선시대 개인일기-서울1 수록일기 자료 사진 촬영’ 건 또한 계약상대자인 △△△△△가 검사 요청(2017.8.4.)을 하였으면 2017.8.18.까지 검사를 완료함이 타당하나 용역 감독공무원이 2017.9.4. 검사를 완료하여, 검사요청 후 완료까지 31일이 소요되었다.

**바. 물품 계약금액 조정 미실시**

고고연구실은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폐간 4종 해제집 발간’에 대해 □.□.□.□.□.□과 물품 계약(계약기간 2019.3.26.~2019.6.28. / 계약금액 32,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 위 계약의 감독(검사) 공무원은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계약상대자가 정당하게 물품을 완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계약상대자인 [OOOO]에 원래 계약금액인 32,000,000원을 물품 대가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950면을 인쇄하도록 계약하였으나 22면이 적은 928면만 인쇄되었으므로 연구소는 전체 계약 금액 중 716,000원을 뺀 31,284,000원으로 계약 금액 조정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 사. 보고서 등 도서 제작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46건(4,371,789,300원)의 보고서·학술지·도록 등의 도서를 제작하며 [표 23]과 같이 수의계약, 가격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하였다.

[표 23] 국립문화재연구소 도서 제작 시 계약방법 내역(2015~2019.9)

(단위: 천 원)

구 분		수의계약	소액견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합 계
계 약	건 수	76	1	69	146
	비 율	52%	0.7%	47.3%	100%
금 액	합 계	1,162,611	15,131	3,194,047	4,371,789
	비 율	26.6%	0.3%	73.1%	100%

연구소는 도서 제작 건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그 이상인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도서 제작 건의 전체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건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전체 계약 중 건수로는 47.3%(69건), 금액으로는 73.1%(3,194,047,000원)를 차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기술능력 평가(80%)와 입찰가격 평가(20%)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때 기술능력 평가 결과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각 부서가 발주한 사업에 응찰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표 24]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도서 제작 계약 결과(2015 ~ 2019.9)

(단위: 천 원)

구분	부서명									
	행정 운영과	연구 기획과	고고 연구실	미술문화 재연구실	건축문화 재연구실	보존과학 연구실	복원기술 연구실	자연문화 재연구실	안전방재 연구실	합계
전체 도서 제작 건수	4	10	45	30	18	7	8	19	5	146
계약금액	262,610	510,341	1,147,687	1,156,148	436,583	76,247	252,856	309,397	219,920	4,371,789
수의계약	-	2	27	11	9	7	3	15	2	76
계약금액	-	48,431	421,719	197,389	128,673	76,247	51,456	229,907	23,920	1,162,611
소액견적입찰	-	1	-	-	-	-	-	-	-	1
계약금액	-	15,131	-	-	-	-	-	-	-	15,131
협상에 의한 계약(A)	4	7	18	19	9	-	5	4	3	69
계약업체 수	2	4	10	8	2	-	2	3	2	15
최다계약 업체와의 계약	건수(B)	2	2	4	3	8	-	4	2	24
	A/B(%)	50%	29%	22%	16%	89%	-	80%	50%	67%
계약금액	262,610	461,910	725,968	958,759	307,910	-	201,400	79,490	196,000	3,194,047

지난 5년간 연구소의 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4]와 같이 행정운영과, 건축문화재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자연문화재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등 5개부서의 경우 각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건수 중 50% 이상을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였고, 건축문화재연구실과 복원기술연구실의 경우에는 각각 1건을 제외한 모든 건(8건 / 4건)에 대하여 □□□□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특히 연구소 전체 69건 중 24건 (34.8%)을 □□□□과 계약(1,068,570,000원)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작한 ‘문화재지’, ‘국가지정 건조문화재 정기조사 보고서’, ‘한국고고학저널’ 등의 경우 매년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하여 창의성, 예술성 등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전문성, 기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 공고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격입찰에 비해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낙찰률이 가격입찰에 따른 계약(88%)의 경우 보다 더 올라가 도서 제작비용이 증가되며, 외부 평가위원 수당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연구소는 [표 25]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낙찰률이 88%를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91.3%이고 전체 건의 평균 낙찰률이 92.52%이므로, 만약 해당 도서 제작 건을 협상의 의한 계약이 아닌 가격 입찰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최대 128,037,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표 25] 국립문화재연구소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률(2015 ~ 2019.9)**

구 분		88%이하	88%초과 92%이하	92%초과 96%이하	96%초과 100%이하	합 계
낙찰률	건수	6	24	30	9	69
	비율	8.7%	34.8%	43.5%	13.0%	평균: 92.52%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02호)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향후 회계 교육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부분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리고 매년 동일하게 발간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편집과 인쇄를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 ①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기관주의)**
- ② 보고서 등 도서 제작에 대한 계약 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고,**(통보)**
- ③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폐간 4종 해제집 발간’과 관련하여 716,000원을 환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환수)]**

# 문 화 재 청

## 주 의

제 목 근무지의 출장 위임·전결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0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제1항은 문화재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은 소관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임·전결 규정(이하 '연구소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2019.1.2.)하였다.

연구소 규정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에 따라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에 따라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소 규정 [별표] 1.국립문화재 공통사항 3)출장명령 및 복명에서 실·과장, 소속기관장의 근무지의 출장인 경우 실무급담당자가 기안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전결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연구소는 2과 7실 7지방연구소 1센터로 구성되어 각각의 실·과장과 소속기관장(지방연구소장과 센터장)은 근무지의 출장 시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하여야 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운영과장 등 직무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 출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1.~2019.9. 기간 중 연구소 실·과장과 소속기관장의 근무지의 출장

결재권자 지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 3]과 같이 위임·전결을 위반(11명 / 78회)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2인(☐☐☐, ☐☐☐)은 위임전결 규정을 과다(50% 이상)하게 위반하여 결재권자를 지정·출장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적된 출장지는 관내 상시 발굴조사 현장이어서 지방연구소장 전결로 출장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연구소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향후에는 연구소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근무지의 출장 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횟수가 과다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장 ☐☐☐	‘19.2.7~현재	가야문화재연구소 업무총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 ☐☐☐	‘19.2.7~현재	나주문화재연구소 업무총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붙임 3] 연구소 실·과장과 소속기관장의 근무지의 출장 결재권자 지정 현황(2019.1. ~ 2019.9.)

기관명	근무지	부서 및 소속기관장 (‘19년 중 근무기간)	근무 지의 출장 건수	결재권자 지정 적정·부적정 건수			미준 수율 (%)	부적정 결재권자 지정 건의 출장지
				적정 *	부적정			
					본인 전결	하위 직급 ** 전결		
행정운영과	대전	☐☐☐☐ (‘19.1.1 ~ 현재)	32	29	3	-	9	나주, 완주, 용인
연구기획과	대전	○○○○ (‘19.1.1 ~ 2.6.)	5	5	-	-	-	
		☺☺☺☺ (‘19.2.7 ~ 현재)	32	32	-	-	-	
고고연구실	대전	○○○○ (‘19.2.7 ~ 현재)	43	43	-	-	-	
미술문화재 연구실	대전	☒☒☒☒ (‘19.1.1 ~ 6.30)	13	12	1	-	8	무주
건축문화재 연구실	대전	●●●● (‘19.1.1 ~ 2.6.)	8	8	-	-	-	
		●●●● (‘19.2.7 ~ 현재)	25	24	1	-	4	익산
보존과학 연구실	대전	△△△ (‘19.1.1 ~ 현재)	25	24	1	-	4	경주
복원기술 연구실	대전	▷▷▷ (‘19.2.7 ~ 현재)	15	15	1	-	7	
자연문화재 연구실	대전	▷▷▷ (‘19.1.1 ~ 6.30)	40	33	7	-	18	서울, 세종, 청주, 포천 * 출장결재 위임전결 위반으로 주의 조치(‘19.6.17)
		▷▷▷ (‘19.7.1 ~ 현재)	15	15	-	-	-	
안전방재 연구실	대전	▷▷▷ (‘19.1.1 ~ 6.30)	24	14	1	-	4	경주
		◁◁◁ (‘19.7.1 ~ 현재)	15	15	-	-	-	
경주문화재 연구소	경주	▽▽▽ (‘19.1.1 ~ 현재)	41	41	-	-	-	
부여문화재 연구소	부여	▽▽▽ (‘19.1.1 ~ 6.30)	26	26	-	-	-	
		△△△ (‘19.7.1 ~ 현재)	17	17	-	-	-	
가야문화재 연구소	창원	☺☺☺ (‘19.1.1 ~ 2.6)	5	5	-	-	-	
		☐☐☐☐ (‘19.2.7. ~ 현재)	52	15	36	1	71	거제, 고령, 고성, 김해, 남해, 대전, 부산, 장수, 창녕, 하동, 함안, 함양
나주문화재 연구소	나주	☐☐☐☐ (‘19.1.1 ~ 2.6)	2	-	2	-	100	대전, 함평
		☐☐☐☐ (‘19.2.7 ~ 현재)	41	19	19	3	54	공주, 남원, 담양, 대전, 목포, 무안, 무주, 서울, 순천, 제주, 진천, 화순
증원문화재 연구소	충주	△△△ (‘19.1.1 ~ 6.30)	14	13	1	-	7	
		△△△ (‘19.7.1 ~ 현재)	5	5	-	-	-	

강화문화재 연구소	강화	●●●● (‘19.1.1 ~ 2.6)	5	5	-	-	-	
		●●●● (‘19.2.7 ~ 현재)	31	31	-	-	-	
완주문화재 연구소	완주	△△△ (‘19.7.25 ~ 현재)	19	19	-	-	-	
문화재보존 과학센터	대전	▷▷▷ (‘19.1.1 ~ 현재)	28	27	1	-	4	무주
계			578	492	74	4	13	

\* 적 정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또는 대결권자를 결재권자로 지정한 경우

\*\* 하위직급 : 지방연구소 기획운영과장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국외 유적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고고연구실은 한민족 네트워크 복원을 위한 국외유적 종합학술연구를 시행하며 러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과 [표 26]과 같이 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표 26] 고고연구실 국외 고고유적 학술연구를 위한 협약 현황(2012년 이후)

국가명	협약월	건 명	협약 기간	주요협약내용
러시아	'14.10.	한러공동 연해주 고고유적 학술연구	'15.03.02. ~ '18.03.01.	매년 야외조사 후 차년도 보고서발간
	'18.02.	"	'18.03.02. ~ '21.03.01.	매년 야외조사 후 차년도 보고서발간
몽골	'15.12.	한국-몽골 간의 문화유산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16.01.01. ~ '18.12.31.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매년)
	'19.03.	한국-몽골 문화유산의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공동연구	'19.01.01. ~ '21.12.31.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
우즈베키스탄	'12.10.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예술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13.01.01. ~ '15.12.31.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
카자흐스탄	'14.11.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카자흐스탄공화국 A.H.마르굴라나 명명 고고학연구소 공동학술교류	'14.11.17. ~ '17.11.16.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17.11.	한국-카자흐스탄 공동학술연구	'17.11.27. ~ '20.11.26.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매년)

### 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시기

고고연구실은 [표 26]과 같이 현재 추진 중인 국외조사의 경우 매년 공동조사(야외조사 등) 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공동연구 협약하여 [표 27]과 같이 국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매년 실시하였다.

고고연구실은 [표 27]과 같이 '러시아 시넬니코보-1 발해보루 유적조사(2016)'와

‘몽골 알타이 시베트하이르한 유적조사(2016)’의 경우와 같이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굴완료년도 12.31. 기준 2년 이내에 발간한 사례가 있으나 협약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는 없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된 5년 후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표 27] 고고연구실 국외 유적 발굴 조사 현황(2011년 이후)

국가명	조사 년도	유적명	조사지역	조사기간 (실조사일수)	보고서 발간일	비고 (협약내용)
러시아	2015	시넬니코보-1 발해보루 유적	연해주	‘15.07.13.~08.19.(33일간)	‘18.12.14.	매년 야외조사후 차년도 보고서발간
	2016			‘16.08.02.~09.02.(33일간)		
	2017	스타로레첸스코예 발해평지성		‘17.07.25.~09.01.(35일간)	‘21.11.30. (예정)	
	2018			‘18.08.03.~08.29.(25일간)		
	2019			‘19.06.18.~07.17.(21일간)		
몽골	2016	알타이 시베트하이르한 유적	바얀올기	‘16.05.18.~06.10.(24일간)	‘18.12.14.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매년)
	2017			‘17.05.17.~06.11.(26일간)	‘20.6.30. (예정)	
	2018			‘18.06.20.~07.18.(29일간)		
우즈베키스탄 ※사업종료	2011	카라테파 유적	수르한다 리아주	‘11.05.22.~06.29.(29일간)	‘19.7.31.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
	2012			‘12.05.01.~06.06.(37일간)		
	2013			‘13.10.16.~10.29.(14일간)		
	2014			‘14.05.27.~06.11.(16일간)		
카자흐 스탄	2015	카타르토베 고분군	알마티주	‘15.07.23.~08.29.(37일간)	‘19.11.30. (예정)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2016			‘16.07.12.~08.27.(46일간)		
	2017			‘17.07.11.~08.26.(46일간)		
	2018	동남부 지역 적석계무덤		‘18.07.31.~09.01.(31일간)	‘19.11.30. (예정)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매년)
	2019	동부 알타이지역 철기시대유적		동카자흐 주	‘19.06.02.~06.28.(25일간)	

국내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연구실은 ▲국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국가 간 상호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아니나 국외 조사 성과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외 발굴 조사 보고서 발간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국외 발굴 조사에 대한 장기 계획 마련 필요

고고연구실은 러시아(2000~) 국외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몽골(2016~), 우즈베키스탄(2011~2014), 카자흐스탄(2015~)에 대해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고고연구실은 연구기획과('15년 주관), 미술문화재연구실('16~'17년 주관), 건축문화재연구실과 공동 추진한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며 [표 28]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몽골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였고, 2015~2019년 기간 중 고고연구실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총 1,961,184천 원이다.

[표 28] 고고연구실 한민족 고대문화 복원 관련 연구과제 사업비 현황

구 분	사 업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천 원)
사업비	250,000	241,797	259,895	698,674	510,818	1,961,184
국외현지조사	몽골 서부알타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몽골 바얀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몽골 바얀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러시아 연해주  몽골 바얀올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러시아 연해주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주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상기 사업에 대하여 2014년 주관부서였던 연구기획과가 작성한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사업 계획(안) 연구기획과-1778(2014.7.28.)호」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1단계(2015~2019, 기초 조사 및 연구)와 2단계(2020~2024, 심화 연구 및 문화콘텐츠개발)로 총 10년이고, 고고연구실도 이 사업과 관련한 2015년~2018년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총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9년은 1단계의 마지막 해로 '조사성과 종합 정리분석, 후속

연구 계획’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후 연구소는 2017년 제4차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연구기획과-2819, 2017.12.4.)를 통해 2018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각 담당부서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표 29]와 같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고고연구실은 2018년 해당 사업을 ‘국외유적 종합학술연구’로 분리하며 해당 과제의 총 연구기간을 2015~2021(7개년) 기간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다시 ‘한민족 네트워크 복원을 위한 국외유적 종합학술연구’로 과제명을 변경하며 연구과제계획서에 2022년 이후에도 상기 연구를 지속(제2차 7개년2022~2028년)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표 29] 고고연구실 한민족 네트워크 조사연구 사업 추진 현황

수행연도	과제명	참여부서	중장기 계획안	고고연구실 사업국가
2015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조사연구	기획과, 미술실, 고고실, 건축실	1차: '15~'19년 2차: '20~'24년	몽골, 카자흐스탄
2016		미술실, 고고실, 건축실	1차: '15~'19년 2차: '20~'24년	몽골, 카자흐스탄
2017			1차: '15~'19년 2차: '20~'24년	몽골, 카자흐스탄
2018	국외유적 종합학술연구	고고실	1차: '15~'21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2019	한민족 네트워크 복원을 위한 국외유적 종합학술연구	고고실	1차: '15~'21년 2차: '22~'28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그러나 [표 28]과 같이 2018년 이후 매년 5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함이 타당하나 2015년 계획에서 언급한 그간의 조사에 대한 성과 종합 정리분석 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2차(7개년) 연구 기간에 대한 구체적 계획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연구과제의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 기간 및 종료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① 연구소 고고연구실에서는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시기에 대하여는 차후 국외 고고유적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각 국가 간에 협약한 내용에 따라 발굴조사보고서가 최대한 신속히 발간될 수 있도록 각 협약 국가의 공동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또한 국외 발굴 조사에 대한 장기 계획 마련에 대하여는 연구과제 수행기간의 연구과제명 및 수행기간이 심의 절차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변경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이 없었고 연구과제의 종료시점이 설정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외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시기를 명시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기 바라며, 국외 발굴사업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기간 및 종료시점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문 화 재 청

## 기관주의

제 목 관사 운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근무자 중 대전 지역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대전지역에 관사를 건립(취득) 또는 임차하여 2019.10월 현재 아파트형 5호, 원·투룸형 주택 6호, 연구동 18호 등 총 29호의 관사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사 관리규정」(이하 ‘관사 규정’이라 한다) 제2조(관리운용) 제2항에 따르면 관사의 형태에 따라 아파트형은 2인 이상, 원·투룸형 주택 및 연구동은 직원 1인 또는 2인으로 거주인원을 정하고 있고, 제4조(입주자의 신청 및 선정)에 따르면 행정운영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 희망신청을 받아야 하고,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제6조(입주기간)에 따르면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자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소는 직원의 퇴직, 전출 등으로 인하여 관사입주자가 퇴거하여 관사의 공실이 발생하거나, 관사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 희망 신청을 받고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2010.10.29. 관사 규정 개정 이후 수차례 관사 공실이 발생하거나 관사입주자의 입주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감사시점까지 본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 신청 공지를 한 사례가 없으며, 관사의 공실이 발생하면 일부 직원들의 소개 또는 추천 등을 통해 관사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표 30] 최근 3년간 관사 입주 현황**

구 분	입 주 기 간			비 고
	2년 미만	2 ~ 4년 미만	4년 이상	
외부관사	7명	4명	6명	최장 15년 10개월
연구동	42명	16명	14명	최장 9년 4개월

또한 관사 입주기간을 확인한 결과 [표 30]과 같이 최대 입주 가능기간인 4년을 넘겨 입주하고 있는 직원이 외부관사 6명, 연구동 14명이고, 최장 입주기간은 외부관사 15년 10개월, 연구동 9년 4개월 동안 입주하고 있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에게만 장기간 관사를 사용하게 혜택을 주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관사 규정에 따라 공실발생시 입주자 선정, 입주기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장기(4년 이상) 입주자에 대하여 퇴거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관사 규정을 준수하여 관사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문화재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이하 ‘보존센터’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외부로부터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의뢰 받은 경우에 「문화재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보존처리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존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 가. 문화재보존처리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보존처리 운영 규정」의 위원회 운영은 2018.12.28. 개정 이전 연 1회(12월 중)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 정기회의 연 2회(상반기, 하반기 1회) 개최 하되 안건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으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존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9. 9월까지 보존처리 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파악한 결과, [표 31]과 같이 보존처리에 대한 신청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는 수시회의 등 개최 없이 1년에 정기회의 1회만 개최함으로써 인해 보존처리 신청 대비 2016년 68.3%, 2017년 3.7%, 2018년 24.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존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보존처리 대상 선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다.

[표 31] 보존처리 신청 대비 위원회 심의 개최 현황

구분	보존처리 신청		위원회 심의 개최		신청 대비 심의 비율	비고
	신청 횟수	유물수	개최 횟수	심의 유물수		
2015년	8건	223점	1회(2015.12.7.)	4건, 213점	95.5%	
2016년	14건	230점	1회(2016.12.12.)	6건 157점	68.3%	

구분	보존처리 신청		위원회 심의 개최		신청 대비 심의 비율	비고
	신청 횟수	유물수	개최 횟수	심의 유물수		
2017년	15건	273점	1회(2017.12.12.)	2건 10점	3.7%	
2018년	16건	95점	1회(2018.12.26.)	6건, 23점	24.2%	
2019년	27건	155점	-	-	0%	

또한 「보존처리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정기회의를 연 2회(상반기, 하반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회의 이외에도 수시회의, 서면회의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으나, 2019년의 경우 27건 155점의 유물 보존처리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10.20. 감사시점까지 한 차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 나. 정기조사와 보존처리업무 연계 적극 추진 필요

보존센터는 2018.3.28. 문화재청 정책협의회에서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와 센터 보존처리 업무 연계 강화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2018.5.8.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와 센터 보존처리업무 연계 강화 계획 보고’를 미술문화재연구실과 유형문화재과의 협조를 받아 내부결재를 하였으며 해당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와 센터 보존처리업무 연계 강화 추진 내용 ]

- 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수리(E), 즉시조치(F) 등급 등)에 대하여 센터에서 대상 선정하는 절차 추진
  - (미술실) 정기조사 후 문화재청에 결과 통보 시 센터에도 동시 통보
  - (센터) 보존처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존처리 대상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에 알림 (※연간 보존처리계획 고려)
  - (문화재청) 센터에서 보존처리 선정한 문화재에 대해 검토 및 확정
- 보존처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정기조사 결과 통보시기에 맞춰 분기별(또는 반기별) 위원회 운영
  - 보존처리 대상 선정 기준 명확히 제시(중요도, 난이도, 시급성 등 고려)

보존센터는 상기 추진 내용에 따라 미술문화재연구실에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보존처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존처리 대상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존처리 업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존센터는 상기 계획 수립 이후 [붙임 6]과 같이 미술문화재연구실로부터 정기조사 결과를 통지 받았다. 보존센터는 당초 계획 수립대로 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 등을 통하여 보존처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나, 2019.9.4. 통보받은 보물 제1000-1호 11 11 11 등 3건은 보존처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 검토하여 센터의 업무 과중, 해당 전문가 수리 필요, 국고보조로 추진 등의 사유로 보존처리 대상에서 미선정 하였다.

아울러 보존처리 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도, 난이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까지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정기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처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다. 보존처리 문화재에 대한 수리 이력 관리 독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에 문화재 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에 문화재수리의 내용, 설계도면 등을 포함하고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sup>

위와 같은 수리보고서와 설계도면은 문화재의 어느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리하였는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고,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자체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수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있고, 문화재청 직원은 정보화담당관실로부터 사용자 권리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메뉴를 쉽게 사용할 수

4) 해당 조항 2017.1.10. 신설

있다.

보존센터에서 2015년~2019.9월까지 국가지정 또는 등록문화재의 보존처리 결과 및 문화재행정포털의 수리 이력 현황을 검토한 결과, [붙임 7]과 같이 총 10건의 지정·등록 문화재를 수리 완료하여 의뢰기관에 결과 통보를 하였으나, 이 중 5개의 문화재가 2019.10월 감사시점까지 문화재행정포털의 보존처리 이력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보존처리 요청기관 또는 관리단체에서 문화재행정포털에 문화재 보존처리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보존센터는 ‘문화재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조사와 보존처리업무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지정 동산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정기 또는 수시 문화재보존처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하여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기준은 대상문화재의 중요도, 난이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처리 완료 후 보존처리 요청기관에 결과보고 문서를 회신하고, 회신문서에 ‘기타: 문서접수 후 문화재행정포털 수리 이력 입력 요망’을 기재하여 보존처리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보존처리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보존처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재 수리 완료 후 보존처리 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붙임 7] 지정·등록 문화재 보존처리 결과 수리이력 관리 현황(2015~2019.9월)

연번	연도	지정 번호	유물명	수량	의뢰기관	의뢰일	보존처리 완료	결과회신	문화재 행정포털 수리이력 입력일
1	2016	국민 218	정온가의 유품	5	무형 문화재과	2016. 11.22.	2017, 2018	2018. 12.31.	×
2	2016	국민 48	동궁비원삼 등	7	무형 문화재과	2016. 11.15.	2018	2018. 06.26.	×
3	2016	보물 597	토기 응기문 발	1	유형 문화재과	2016. 11.30.	2018	2018. 04.30.	2018. 05.04.
4	2016	국보 326	청자순화4년명항아리	1	유형 문화재과	2016. 11.30.	2018	2018. 11.16.	2019. 07.07.
5	2016	보물 416	청자투각고리문의자	1	유형 문화재과	2016. 11.30.	2018	2018. 11.16.	2019. 07.07.
6	2017	보물 217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불안	2	수리 기술과	2017. 06.20.	2017	2017. 09.11.	2018. 07.23.
7	2017	등록 607	서재필 진료가운	1	근대 문화재과	2017. 03.13.	2019	2019. 03.06.	×
8	2017	등록 609	유림 양복	2	근대 문화재과	2017. 03.13.	2019	2019. 03.06.	×
9	2017	보물 876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10	한국국학 진흥원	2017. 04.07.	2018	2018. 12.28.	2019. 07.05.
10	2018	보물 1977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1	유형 문화재과	2018. 06.22.	2018	2018. 07.03.	×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목조문화재 가해생물종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중요 목조문화재의 생물피해 현황 파악 및 종합 방제 방안 수립을 위해 흰개미 탐지견 등을 활용한 목조문화재 및 주변 흰개미 서식 실태조사 및 목조문화재 내부의 미생물 분포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를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 통보하면 안전기준과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조사 결과의 방제대책에 따라 방제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 되고 있다.

연구소는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정보의 체계적 관리 기반 확립과 조사 D/B를 활용한 통계적 모니터링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목조문화재 가해생물종 조사 표준 운영 절차 및 활용」 연구 용역을 (주)이비이과 176백만 원에 계약 체결 후 2016.7.5.부터 2016.12.9.까지 용역을 추진하여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정보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연구소는 상기 시스템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간의 조사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32] 목조문화재 가해생물종 조사 추진 실적 대비 데이터 입력 현황(2019. 9월말 기준)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조사건수	57	63	73	65	63	116	121	124	34	1,119
등록건수	-	-	72	11	31	-	121	124	34	473

그러나 연구소는 2016.12.9. 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조사 실적은 100%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2016년 이전의 조사 실적은 총 437건 중 114건(21.6%)만 입력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의 입력항목을 살펴보면 공통정보, 건축물별피해조사, 종합결과, 방제정보 등을 입력토록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방제정보는 방제처리 업체, 방제기간, 방제금액, 방제처리방법, 처리부위, 사용기기 및 화학약제 등을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조사결과에 따른 방제처리 현황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로부터 수시로 받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지 않고 담당자가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조사자료 미입력 및 조사결과에 따른 방제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방충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방제기간 및 사용 약제, 업체 정보 등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해 방제정보 항목은 향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연구소 간 세부사업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목조문화재 가해 생물종 정보시스템’에 시스템 구축 이전 조사 실적을 조속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문 화 재 청

## 기관주의

제 목 고생물유체 연구정보시스템 운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고대 유전자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대 인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고생물유체 연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은 ‘한국 출토 인골 정보시스템’과 ‘고대 유전자원 정보 시스템’으로 각각 운용하고 있다.

### 가. ‘한국 출토 인골 정보시스템’ 운용 부적정

‘한국 출토 인골 정보시스템’(이하 ‘인골 시스템’이라 한다)은 연구소에서 ‘고대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연구’ 학술연구용역을 2008.6.12.부터 2010.12.10.까지 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차례에 걸쳐 계약 체결하여 완료한 성과물 중 시스템 구축 분야를 성능 개선 용역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인골 시스템은 인골에 대한 정보를 서지 정보와 인골 정보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통계와 분석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구축 당시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대국민 서비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소는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 및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등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인골 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 이후 [붙임 8]과 같이 2012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②과 용역 계약을 통해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계속하였으나,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 정보는 2015년 하반기<sup>5)</sup>에 2013년

발굴보고서 등의 서지 정보를 마지막으로 입력한 이후 2019년 10월 감사기간까지 데이터 입력 실적이 없는 등 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구축 당시부터 계획한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2014.12.18. ‘한국 출토 인골 정보시스템 매뉴얼’ 책자 500부를 발간하고 배포하였으나, 2019.10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공개하지 못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 나. ‘고대 유전자원 정보시스템’ 운용 부적정

연구소는 한민족의 기원 및 정체성 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인 출토 인골 고대 DNA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2009.6.19. 부터 2011.10.31.까지 (주)비비비과 총 3차례에 걸쳐 ‘고대 유전자원 정보시스템’ 용역 계약 체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대 유전자원 정보시스템’은 고대 출토 인골, 동물뼈, 식물유체등의 생체 유기물질에서 추출한 DNA에 대한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시대적, 지역적 정보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상기 시스템의 충실한 자료 입력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가능케 하고 고대 한민족의 이동경로 및 기원을 규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소는 ‘고대 유전자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1년 이후 [붙임 8]과 같이 인골 시스템과 통합으로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주)비비비과 용역 계약을 통해 성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계속하였으나, 2015.8.24. 자료 입력 이후 2019년 10월 감사시점까지 데이터 입력 실적이 없는 등 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5) 시스템에서 정확한 입력날짜를 확인할 수 없음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한국 출토 인골 정보시스템’과 ‘고대 유전자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① ‘한국 출토 인골 정보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해 나갈 예정이며, ② ‘고대 유전자원 정보시스템’은 매년 국내외에서 분석이 의뢰되고 있는 출토 인골, 동물뼈 및 식물유체의 DNA 분석결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고생물유체 연구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붙임 8] 고생물유체 연구정보시스템 관련 용역 추진 실적

연도	과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과업내용	비고
2008	고대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연구	2008.06.12. ~ 2008.11.30.	130,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반도 출토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연구 및 분석자료의 DB화 - 고대 인골 정보의 DB 통합 및 정보시스템 구축	개별(한국 출토 인골 시스템 관련)
2009	고대 인골의 형질(체질) 인류학적 연구	2009.03.01. ~ 2009.11.30.	80,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반도 출토 인골의 형질인류학적 연구 및 분석 자료의 DB화 - 형질인류학 분석자료의 분석 및 통계시스템 개발	개별(한국 출토 인골 시스템 관련)
2009	고대 유전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2009.06.19. ~ 2009.11.30.	47,200	(주)☞☞☞	- 고대 유전자원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 고대DNA분석 결과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고대 유전자원 시스템 관련)
2010	고대 인골 형질(체질) 인류학적 연구	2010.05.14. ~ 2010.12.10.	69,818	☞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외 형질인류학 연구자료 조사 및 DB시스템 구축과 확장 - 국내외 형질인류학 정보 비교 분석 자료 확보	개별(한국 출토 인골 시스템 관련)
2010	고인골 Y-SNP 및 고고 생물 유전정보 시스템 구축	2010.04.27. ~ 2010.11.30.	92,400	(주)☞☞☞	- 고인골 Y-SNP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인골 Y-SNP 하플로그룹 예측 및 관리 - 고고 생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 시스템의 분석, 통계, 데이터 베이스 개선	개별(고대 유전자원 시스템 관련)
2011	고고 생물 대용량 유전정보 DB 시스템 구축	2011.02.25. ~ 2011.10.31.	78,400	(주)☞☞☞	- NGS 데이터베이스 구축 - NGS 분석 지원 도구 개발	개별(고대 유전자원 시스템 관련)
2012	고대 인골의 형질인류학 통합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용역	2012.10.30. ~ 2012.11.29.	20,000	(주)☞☞☞	- 웹사이트 관리시스템(관리자페이지) 개선 및 데이터 수정·보완 - 보안기능 보완 및 강화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강화	개별(한국 출토 인골 시스템 관련)
2013	고생물유체 연구정보 시스템 성능개선	2013.11.12. ~ 2013.12.12.	20,600	(주)☞☞☞	<고대 유전자원> - 정보관리 기능 추가 구현 - 인터페이스/DB 수정 및 보완 <한국 출토> -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구조변경 - 데이터 변경 및기능 개선	통합
2014	고생물유체 연구정보 시스템 성능개선	2014.08.25. ~ 2014.10.31.	21,500	(주)☞☞☞	<고대 유전자원> - 서비스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 DBMS 변경 <한국 출토> - 데이터 등록관리인터페이스 구현	통합

연도	과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업체	과업내용	비고
2015	고생물유체 연구정보 시스템 성능개선	2015.01.28. ~ 2015.10.31.	21,700	(주)이이이이	<고대 유전자원> - 서비스 이원화 프레임워크 통합 <한국 출토> - 서지정보 이미지등록 및 자료 조회인터페이스 개선 - 일괄등록 프로세스 구현 - 국내 인골 자료 수집 및 DB화	통합
2016	고생물유체 연구정보 시스템 성능개선	2016.11.24. ~ 2016.12.16.	14,500	(주)이이이이	<고대 유전자원> - 시스템 용어사전 변경 및 일관성 유지 - 데이터 등록 및 하플로그룹 검색/ 예측 기능 안정화 <한국 출토> - 서지정보 및 인골정보 상세화면 고도화 o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통합
합계	11건		596,118			

# 문 화 재 청

## 통 보

제 목 이동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 가. 무인 항공기·드론 등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물품관리법」 제5조(분류)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제4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2008년부터 항공촬영 등을 위해 무인항공기(헬기·드론)를 [표 33]과 같이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

[표 33] 국립문화재연구소 무인항공기(헬기·드론) 구매현황

(단위: 대, 천 원)

구 분	구 입 년 도							합계
	2008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입대수	1	1	3	2	1	4	2(1*)	14(1*)
구입부서	고고(1)	자연(1)	고고(1) 건축(1) 행정(1)	고고(1) 자연(1)	자연(1)	고고(2) 안전(2)	자연(2)	고고(5) 건축(1) 안전(2) 자연(5) 행정(1)
물품가액	23,100	19,000	17,895	11,830	2,273	29,965	331,890	435,953

\* 초경량 드론용 라이다 시스템 납품(330,000천 원) 예정(12월 중순 납품)

연구소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무인항공기 활용 현황은 [표 34]와 같으며 2016.1월~2019.10월 기간 중 총 697회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였고, 1대의 연평균 사용 일수는 24.7일이며 2016.1~2019.10 기간 중 하루에 2대 이상의 무인항공기가 사용된 경우는 총 114일(연평균 29.8일)에 불과하고, 특히 행정운영과에서

2015.11.27. 구입하여 보유중인 DJI(CN/Phantom 3 Professional, 4,000천 원)의 경우 구입 이후 총 47일(연평균 11.8일)만 사용되었다.

[표 34] 국립문화재연구소 무인항공기(헬기·드론) 활용현황

구 분		연도별 사용 내역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전체보유대수(1월기준)		5	7	8	12	12
연간사용일수		210	157	166	164	697
1일 2대 이상 사용일	2대	34	17	22	24	97
	3대	4	1	3	7	15
	4대	-	-	-	2	2
	소계	38	18	25	33	114
1대 평균 사용일수		42	22.4	20.8	13.7	24.7

연구소는 물품의 구매 시 사용목적, 정수, 내용연수, 유희 물품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구매함이 타당하나 ▲고고연구실의 경우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무인항공기(드론) 2대(2015년, 2016년 구입)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8년 2대를 추가 구매함으로써 노후화 등을 사유로 기존 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연문화재연구실은 상기 표와 같이 하루에 2대 이상의 무인항공기가 사용된 경우가 연평균 29.8일에 불과함에도 해당 부서 각각의 업무 담당별(명승, 지질, 식물)로 무인항공기(드론)를 구매하여 총 5대(1대는 2019년 12월 납품예정)를 보유하고 있는 등 무인항공기 구매 시 구매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물품을 구매하였다. 앞으로는 신규 무인항공기 구매 시 타 부서 유희 장비의 활용 등 기존 장비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운영과는 발굴현장 촬영 등을 위해 2016.12.27. 캠코더(Nikon, ID/KeyMission 360, 12,350천 원)를 구입하였으나, 캠코더 촬영 전문담당자의 업무 과다와 빈번한 교체 등을 사유로 2019.10월 현재까지 몽골 파지릭고분 현장기록(2017.5.28.~6.3.), 연해주 스타로레첸스코예 현장기록(2017.8.25.~8.27.)등 2회(9일)만 사용한 후 사용 실적이 없다.

이와 같이 특수한 인력이 필요한 장비 구입 시 인력 확보 및 대체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후 장비를 구입함이 타당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장비를 구입하여 장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 나. 무인 항공기·드론 등의 정비 및 보험가입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제5조(정비점검의 원칙)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목적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보유·활용중인 무인항공기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 중인 13대 중 고장 수리(1대), 노후화(3대), 사용 빈도가 낮음(1대) 등의 사유로 5대에 대하여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13대중 2008년도에 구입한 1대를 제외한 12대는 내용연수(5년)가 지나지 않아 수리·정비 등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험을 가입하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함이 타당하다.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신규 무인 항공기·드론 구매 시 유희 장비의 활용 방안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구매를 자제하고 장비 필요 부서에서는 보유중인 부서에서 대여 등으로 공동 활용하여 현재 보유중인 무인 항공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고, 현재 고장 난 드론은 신속히 수리하여 정비하고 보험가입이 안 된 드론은 보험에 가입하여 사용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무인 항공기·드론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에 미가입한 드론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문 화 재 청

## 개 선

제 목 자체 행정규칙 대국민 제공 미흡 및 규정 재검토 필요  
관 계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용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붙임 9]와 같이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등 28개의 자체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가. 자체 행정규칙 대국민 제공 미흡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6호)」 제2조(전산화 된 법령정보의 제공)는 법제처장이 현행의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부령·훈령·예규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전산화하여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였다.

연구소는 28개의 자체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제정 및 개정할 때마다 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이 타당하나, [붙임 9]와 같이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등 총 10건을 개정 후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게재하지 않았다.

### 나.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현행화 미흡

연구소는 「공무원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위임한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자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국립문화재연구소예규, 이하 '자체수당지침'이라 한다)」을 2007.5.1. 제정한 후 2012.8.1 개정하였다.

이 자체수당지침에는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업무수당 등과 함께 위험근무

수당, 업무대행수당에 대한 지급 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35] 위험근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변경 내역

항목		지급액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9.7.1.시행)
위험 수당	갑	월 50,000원	60,000원
	을	월 40,000원	50,000원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다수일 경우 각각 3만원	월 20만원, 다수일 경우 20만원을 1/n 씩

그러나 2012.8.1 이후 「공무원보수 규정」은 19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31번 개정된 결과 위험근무수당 등의 경우 [표 35]와 같이 자체수당지침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액이 서로 차이가 있다.

또한 연구소는 자체수당지침을 개정하는 대신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 시 자체수당지침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자체수당지침은 현재 사문화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연구소는 향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수당지침을 검토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자체 행정규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력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개선)

[붙임 9]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제정·개정 현황

연번	행정규칙명	제정일자 (규칙 번호)	최종 개정일자 (규칙 번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여부
1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2007.01.04. (훈령 제01호)	2019.07.23. (훈령 제94호)	게재
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2007.12.28. (훈령 제05호)	2018.11.14. (훈령 제88호)	미게재
3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2008.12.30. (훈령 제08호)	2018.06.04. (훈령 제86호)	미게재
4	국립문화재연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009.03.16. (훈령 제09호)	2017.12.27. (훈령 제82호)	미게재
5	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	2010.05.01. (훈령 제17호)	2016.12.28. (훈령 제74호)	게재
6	문화재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2010.09.08. (훈령 제19호)	2018.12.28. (훈령 제89호)	미게재
7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규정	2013.10.30. (훈령 제40호)	2018.03.06. (훈령 제84호)	미게재
8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규정	2014.05.27. (훈령 제51호)	2017.12.18. (훈령 제81호)	미게재
9	문화재 간행규정	2009.12.30. (훈령 제14호)	2019.09.23. (훈령 제97호)	미게재
10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14.06.18. (훈령 제52호)		게재
11	방사선안전관리규정	2013.10.11. (훈령 제39호)	2014.03.19. (훈령 제46호)	게재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2013.11.12. (훈령 제43호)		게재
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직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2013.11.11. (훈령 제42호)	2017.10.20. (훈령 제80호)	미게재
14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 및 연구개발정보 관리 규정	2013.11.04. (훈령 제41호)	2017.04.24. (훈령 제76호)	게재
15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2011.10.10. (훈령 제27호)		게재
16	보존과학연구지 연구윤리규정	2011.05.24. (훈령 제24호)		게재
17	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	2008.07.07. (훈령 제06호)		게재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위임·전결 규정	2019.01.02. (훈령 제90호)	2019.07.23. (훈령 제95호)	게재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정보관 운영규정	2005.11.23. (지침 제02호)	2017.08.21. (지침 제29호)	게재
20	국립문화재연구소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	2003.05.28. (지침 제01호)	2014.05.28. (지침 제27호)	게재
21	국립문화재연구소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2014.04.04. (지침 제26호)		게재
22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2010.09.17. (지침 제13호)	2018.07.02. (지침 제31호)	미게재
23	국립문화재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2009.05.31. (지침 제06호)	2010.12.29. (지침 제14호)	게재
2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2005.10.24. (지침 제03호)	2019.02.01. (예규 제27호)	게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	2007.12.28. (예규 제05호)	2017.10.01. (예규 제25호)	게재
26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07.05.01. (예규 제01호)	2012.08.01. (예규 제19호)	게재
27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관 운영규정	2012.07.17. (예규 제18호)	2016.11.30. (예규 제23호)	미게재
28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2018.09.28. (예규 제26호)		게재



연구소는 지속적인 협의·면담의 결과로 을지대학교병원 측에서 32백만 원 중 17백만 원을 감면(53%)해 주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몽골대통령(칼트마 바툴가)이 주한몽골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학자를 위해 노력한 병원과 의료진에 감사서신을 전달(9.11)하였다.

몽골 연수생에게 갑자기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병원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쳤으며, 몽골연수생이 20일 만에 퇴원(9.11)하여 몽골 본국으로 무사히 귀국(9.19)함으로써 귀감이 되었기에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붙임 10] 2019년도 ACPCS 초청연수 연수생 관련 조치 경과

일자	현 황	비고
08.23.(금)	· 연수생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대전을지대병원) 입원 · 연구소 직원 응급실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 몽골 현지 가족 및 기관 등에 상황 전파	응급실
08.24.(토)	· 인공호흡기 설치 및 약물치료 · 몽골 가족 초청을 위한 기관협조 추진(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몽골역사고고학연구소, 주한몽골대사관, 외교부 동북아협력과) · 연구소 직원 응급실 비상근무	
08.25.(일)	· 몽골 현지에서 긴급 상황 발생 가족 면담 및 귀국 추진 · 연구소 직원 응급실 비상근무	
08.26.(월)	· 의사진단: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에 대한 폐렴(관상동맥우회 시술 시행) · 국외 자국민 보호차원에 병원비 분담 등 기관간 협조요청(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몽골역사고고학연구소, 주한몽골대사관, 외교부 동북아협력과) · 내과계 중환자실로 이송 및 폐렴 치료 진행	야간 중환자실 이동
08.27.(화)	· 원무과 면담(저개발국 외국인 및 의료보험 미적용에 따른 병원비 감면협조 요청)	
08.28.(수)	· 몽골 가족 입국(배우자 외 1명) 및 중환자실 면회 · 연수생 중환자실에서 폐렴 치료 진행	
08.30.(금)	· 국외 자국민 보호차원에 병원비 분담협의를 위한 면담[주한몽골대사관(참사관), 외교부 동북아협력과(담당사무관)]	
09.02.(월)	· 병원비 감면협의(을지대 원무과) · 병원비 부담협의(배우자)	
09.03.(화)	· 폐렴 상태 호전으로 인공호흡기 제거, 일반병실로 이동	일반 병실이동
09.04.(수)	· 담당의사 면담	
09.06.(금)	· 을지대학교병원 의료비 감면협의 · 담당의사 면담	
09.10.(화)	· 몽골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서신받음 · 연수생 병원비 납부	
09.11.(수)	· 몽골대통령 서신 및 청장 감사패 전달식 개최 · 연수생 퇴원	퇴원
09.16.(월)	· 연수생 통원치료 및 의사면담	
09.19.(목)	· 연수생 몽골 귀국	귀국